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43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동우 의원)

가. 제안사유

-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해 행정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대행의 범위와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사전 검토 및 공공성 평가가 미흡하여 사업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이 이뤄지거나, 위탁 이후 성과 관리와 도의회 견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사후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도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정의(안 제2조)
-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안 적용 제외 사무 명시(안 제4조)
-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 절차 규정 (제5조~제7조)
- 도의회 동의 및 위탁 예산 편성 관련 규정 (제8조)
- 수탁기관 선정, 책임소재, 재위탁 금지 등 규정 (제9조~제11조)
- 경비 부담, 사무 수행 중 사용료 등 징수,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 (제12조~제14조)
- 사무처리지침, 사무편람, 교육 등 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15조~제17조)
- 지도·감독 및 처분, 실적보고 및 감사 규정 (제18조~제20조)
- 성과평가의 방법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최근 도정 전반에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한 사무 위탁·대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 제도와 관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 11개 시·도에서(대전, 경기, 세종, 충남, 울산, 대구, 전북, 부산, 경남, 경북, 제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 현황(2016~2025년) >

(단위 : 천원)

연도	경상적위탁·대행(A)		자본적위탁·대행(B)		합계(C=A+B)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2016	7,310,196	0.5	16,949,164	1.17	24,259,360	1.67
2017	22,569,539	1.55	13,349,727	0.92	35,919,266	2.47
2018	28,608,572	1.76	30,585,473	1.88	59,194,045	3.64
2019	32,179,079	1.81	33,038,572	1.86	65,217,651	3.67
2020	45,488,159	2.21	28,328,431	1.38	73,816,590	3.59
2021	60,161,796	3.24	22,788,517	1.23	82,950,313	4.47
2022	61,858,361	2.82	53,339,374	2.43	115,197,735	5.25
2023	65,565,028	2.62	95,712,591	3.82	161,277,619	6.44
2024	68,521,262	2.69	115,546,313	4.54	184,067,575	7.23
2025	75,511,182	2.88	57,656,680	2.2	133,167,862	5.08

*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추출 자료(본예산, 자체재원, 성질별 세출총괄표 기준)

** 제4조(적용제외)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총예산 규모로 실제 의회의 동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의 예산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위탁 대상 기관의 전문성이나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이뤄지거나, 위탁 이후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도의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을 통한 사무 위탁·대행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위탁 타당성 검토, 적격성 심사, 예산 편성의 정당성 확보, 성과 관리 등의 장치가 조례로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개념, 대상, 절차, 통제 수단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방지하고, 위탁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도의회의 동의 절차와 사후평가, 재위탁 금지, 지도·감독 및 성과활용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위탁’, ‘대행’, ‘수탁기관’, ‘대행기관’ 등 조례 운영에 필수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를 통해 조례 해석과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탁 사무의 법적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임.

- 안 제4조는 조례 적용 제외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지자체 간 공동사업, 재난 등 긴급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조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관련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위탁 사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경우는 심의와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됨.
 -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등에서는 위탁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들을 의회 동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탁·대행을 추진하기 전, 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성,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하여 위탁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회의 절차,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하거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함.
 - 타 위원회와의 기능 통합사례 : 울산-민간위탁관리위원회, 대구-보조금관리위원회, 전라북도-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등

- 안 제8조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주요 사항(사무명, 예산, 필요성 등)을 포함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장 시에도 상임위 보고 또는 동의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함. 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동의 없는 예산편성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 기능을 실질화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사업 중 보조재원(국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282개이며, 그 중 사업비 1억 원 초과 사업은 139개이고, 제4조(적용제외) 조항을 모두 적용할 경우 의회동의 대상 사업의 범위는 더욱 축소됨.
- 안 제9조~제11조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책임소재, 재위탁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성, 전문성, 인력·시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기관이 타 기관에 재위탁할 수 없도록 명시함. 사무 수행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나, 도지사는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여 행정책임 구조를 명확히 함.
- 안 제12조~제14조는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 사용료·수수료 징수 및 정산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의 자금 지원요건,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승인, 부정 집행 시 환수조치 등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안 제15조~제17조는 위탁 사무의 표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처리지침 수립, 사무편람 작성·승인, 공무원 및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8조~제20조는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보고, 감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의 감독 권한과 필요 시 서류제출 요구, 현장 검사, 시정명령 및 처분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부당 사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 안 제21조는 도지사가 매년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수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기반 행정 운용의 근거를 마련함. 조례안 시행 초기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연계 가능하도록 하였음. 다만, 향후 실효성 있는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행정사무의 위탁·대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추진 절차와 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위탁·대행 사무의 사전 검토, 심의위원회 운영, 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재위탁 금지, 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까지 위탁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무적 이행 가능성 또한 고려된 구조로 판단됨.
- 특히, 도의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감시 기능을 제도화한 점은, 최근 지방자치 강화 및 재정 민주주의 흐름에 부합하는 규범적 개선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중복 방지, 수탁기관의 실질적 책임 확보 방안, 성과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 등은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행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제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정부공모사업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사무
4.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대행사무명, 수탁·대행기관 등 위탁·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공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 및 관리의 용이성
5.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분야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및 내용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연장 또는 갱신의 경우는 추진 실적을 포함한다)
3.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4. 위탁·대행기간(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7.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동일한 수탁·대행기관에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도지사로부터 위탁·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대행기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사무처리지침)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절차·기준, 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제2항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실적 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각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다음 년도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시기,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위탁·대행사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대행 중인 사무로서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

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제11조제4항 관련)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 사 유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